

[별첨1]

서류전형(심사)채점표

1. 접수번호 (응시번호)		2. 접수 년 월 일	2016 년 월 일 ()			
3. 채용예정 직 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우리아이 복지플래너)					
4. 시험구분	서류전형	직 군	무기계약직	직 렬	간호사	
5. 성 명	(한글)	6. 생년월일	7. 연령	8. 성별		
	(한자)					
9. 최종출신학교			10. 자격 및 면허			
11. 경 력						
12. 담당직무의 구체적 내용						
13. 심 사 요 소	판 정					
가. 학 력	적 격		부 적 격			
나. 경 력						
다. 담당직무의수행능력						
라. 임용직위내용의적합성						
14.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응시원서 () 3. 졸업증명서()		4. 면허증 사본() 5. 경력증명서()			
15. 비 고						
16. 시험시행 년 월 일	2016년 1월 일		16. 담당위원	(인)		

- (주) 1. 판정은 적격, 부적격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여 판정한다.
 2.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날인 한다.
 3. 비고란은 면접시험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별첨2]

무기계약직 간호사 채용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의결서

- 심사일시 : 2016년 1월 19일
- 심사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6층 보건교육실
- 안 건 : 무기계약직 간호사 채용시험 1차 서류전형
- 직 렬 : 간호사
- 의결사항

무기계약직 간호사 채용 1차 서류전형 심사결과 별첨과 같이 합격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의결함.

【간호사】

번호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1				
2				
3				
4				
5				
6				

2016. 1.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첨3]

면 접 시 험 채 점 표

1. 접수번호 (응시번호)		2. 년 월 일	2016년 1월 일			
3. 임용예정 직 명	무기계약직					
4. 시험구분	신규채용 시험	직렬·직류 (분 야)	무기계약직(간호사)			
5. 성 명	(한글)	6. 생년월일	7. 연령	8. 성별		
	(한자)					
9. 최종출신학교						
10. 담당직무의 구체적 내용		친절성, 능동·적극적 업무처리				
11. 평 정 요 소		12. 평 정 기 준 점 수		13. 위 원 평 정 점 수		
가. 공무직의 정신자세		상(30점), 중(25점), 하(20점)		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30점), 중(25점), 하(20점)		점		
다. 친절성, 능동·적극적 업무처리		상(10점), 중(5점), 하(2점)		점		
라.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점		
마.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점		
바. 창의력, 약력, 기타 발전가능성		"		점		
합 계		만 점 : 100점		계 점		
14. 특 기 사 항						
15. 시험시행 년 월 일	년 월 일	16. 담당위원		(인)		

- (주) 1. 시험위원은 굵은 선에만 기입하여야 합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시험위원의 특별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3. 부득이한 경우 기재한 점수를 정정할 시는 반드시 정정한 점수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별첨4]

무기계약직 간호사 채용 2차 전형면접시험위원회 의결서

- 심사일시 : 2016. 1. 21. (목) 14:00 ~
- 심사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6층 보건교육실
- 안 건 : 무기계약직 간호사 채용 2차 전형 면접시험
- 의결사항
무기계약직 간호사 채용 2차 전형 (면접시험) 결과 별첨과 같이 최종 합격 대상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였음을 의결함.

【 최종 합격대상자 】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예비 후보자 】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2016. 1.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첨5]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무기계약직 간호사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대문구지방무기계약직선발심사위원회 귀중